

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1168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. 6. 30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9. 7. 2

다. 상 정 의 결 일 자 : 2009. 7. 13

총무위원회 상정의결

2. 개정이유

가. 특수경력직공무원(별정직공무원)에 외국인 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
기준 완화

-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제외

나.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시 결원보충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
개정(2008. 12. 31) 사항을 반영

3. 주요내용

○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(안 제4조의2)

가.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
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 마련

○ 지방별정직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

가.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(안 제11조제1항)

-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의한 6개월 이상(출산휴가와 연계하여
3개월 이상) 육아휴직하는 경우 결원 보충 가능

나.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(안 제11조제2항)

-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
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음.

○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 마련(안 제12조)

가.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임용 등
각종 인사관리 반영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의안번호 제1168호 고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의2에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에 있어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외국인 채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,
- 안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결원 보충과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,
- 또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서 평정하고(안 제12조), 징계에 관하여는 『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』을 적용(안 제13조)하며,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(안 제14조)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임.
- 위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『지방공무원법』이 개정됨으로서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사항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
※ 참고자료

· 우리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현황

계	행정과	보건소	농업기술센터
14	1	12	1

5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문 :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외국인을 굳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?
- 답 :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언어문화 등 그에 따른 대처를 해나가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놓기 위함이고 당장은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은 없음.
- 문 : 현재 별정직공무원의 배치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답 : 부속실에 1명, 농기계수리에 1명,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각 1명 등 총14명이 배치되어 있음.

- 문 : 법 제25조의2와, 법 제63조제1항의 내용이 무엇인지?
- 답 : 법 제25조의2는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조항이고, 법 제63조제1항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도록 한 사항임.
- 문 : 신설되는 14조에 별정직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?
- 답 :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함에 있어 어떠한 특혜를 부여치 않고 동등하게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 :

- 2009. 7. 13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